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3년 6월

[세법개정](#) | [과세관청 소식](#) | [예규·판례](#) | [Contacts](#)

• 예규·판례

가. 공장의 완공은 구 상증세법 제 42 조 제 4 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심과 달리 구 상증세법 제 42 조 제 4 항을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한 규정으로 보면서도, 공장의 완공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장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 결론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 42 조 제 4 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함.(대법원 2019 두 31921, 2019 두 31921, 전심 과정 서울고등법원 2017 누 86721, 2018.12.12, 서울행정법원 2017 구합 58755, 2017.11.16, 조심 2015 서 0267, 2015 서 2317(병합), 2016.12.23).

■ 처분의 경위

- 싱가포르에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AAA 법인은 2003. 12. 19. 중국 청도시에 설립된 BBB 유한공사의 주식 90%를 취득하였음
- 원고들은 조부나 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을 자금 원천으로 삼아 AAA 가 2004 년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AA 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음.
- 한편 BBB 은 2006 년 7 월 무렵 석유화학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완공하고 2006. 9. 19. 청도시 당국으로부터 공장 시운전에 대한 동의를 받아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시작하였음.

- 과세관청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공장의 완공'으로 인하여 증가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 991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 42 조 제 4 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
-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4. 9. 11. 원고들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결정·고지하였음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심에서는 사건 공장을 완공한 것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 건축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 2 조 제 2 호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2 조 제 4 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설령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를 이 사건 공장의 완공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 쟁점

- 공장의 완공이 구 상속세법 제 42 조 제 4 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상속세법 제 42 조 제 4 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적 규정인지 아니면 제한적 열거규정인지(예시적 규정)

■ 판단(증여세부과처분취소 기각)

- 대법원은, 공장의 완공은 구 상속세법 제 42 조 제 4 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심과 달리 구 상속세법 제 42 조 제 4 항을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한 규정으로 보면서도, 공장의 완공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장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 결론적으로 구 상속세법 제 42 조 제 4 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 ✓ 구 상속세법 제 42 조 제 4 항의 '개발사업'을 원심과 같이 구 개발이익 환수법 제 2 조 제 2 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음. 구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구 개발이익환수법 제 1 조)로서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구 상속세법 제 42 조 제 4 항과는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달리하기 때문임. 그러므로 이 사건 공장의 완공은 기업이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 건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구 상속세법 제 42 조 제 4 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5. 2. 3. 대통령령 제 26069 호로 개정되면서 제 23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재산가치증가 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즉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구체화하였음. 위 규정에 따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그 사유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때이며, 그 중

제 3 호는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음.

2) 구 상증세법 제 42 조 제 4 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음.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 42 조 제 4 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됨.

✓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구 상증세법 제 42 조 제 4 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유형을 열거한 다음 이와 유사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취지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보는 전제에서 규정되어 있음.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31 조의 9 제 5 항은 2010. 2. 18. 및 2013. 6. 11. 각 개정되면서 기존 재산가치증가사유들을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였는데, 제 4 호에서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말미에 '인가·허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개정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31 조의 9 제 5 항이 지하수개발 등의 '신고수리'를 고려하여 '인·허가 등'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등'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부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상장경 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 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 2022 전 7861, 2023.06.07)

■ 처분의 경위

- 청구인은 2014.6.1.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한 사람으로 2016.6.30. AAA(쟁점법인에서 퇴사한 동기임원으로 이하 "쟁점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주(취득 당시 지분을 8.8%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총 ○○○ 원(1 주당 ○○○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었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2021.2.3.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 41 조의 3(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증여이익(○○○ 원)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21.8.31. 처분청에 2021.5.3. 증여분 증여세 ○○○ 원을 신고·납부하였음.
- 청구인은 2022.4.20. 처분청에 쟁점법인의 상장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상증법 제 41 조의 3 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납부한 증여

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0. 이를 거부하였음.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쟁점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그 주식이 상장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 조의 3(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판단(경정처분 거부처분 취소)

- 주식상장이익 증여 과세제도 입법취지와 쟁점주식의 취득 전 후 쟁점법인의 급속한 성장이 없었던 점, 쟁점주식을 양도 전 퇴사로 인하여 내부정보를 알고 있기 어려웠던 제반사항을 감안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주식상장이익 증여 과세제도’는 1999.12.28. 상증법에 최초로 도입되어 2000.1.1. 시행되었는바,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에 과세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증여의제규정으로 입법되었음.
- ✓ 이후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의제규정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 규정으로 그 법적 성격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조문 제목이 변경되었으며, 그 입법목적 역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는 데 있으므로 (헌재 2015.9.4. 2012 헌가 5 참조), 주식 취득 당시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조심 2021 서 6914, 2022.12.5., 같은 뜻임).
- ✓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직전 사업연도(2015년)의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000 원, 자산총액은 000 원으로 그 전 사업연도와 대비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시점은 2016년 9월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2016년 6월) 쟁점법인의 상장 또는 쟁점법인의 급속한 성장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통한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양도인은 청구인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대학교 동문 또는 전 직장 동료에 불과하여 청구인과의 경제적 연관관계도 찾기 어려운바, 쟁점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 전부를 청구인에게 분여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양도인이 청구인에게 부의 무상이전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쟁점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법인의 상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쟁점양도인이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여 법인의 내부정보를 알기 어려운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로 인해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조특, 서면-2022-법규국조-2297, 2023.06.13)

■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1.12.1.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의 제조, 판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01.12.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회사임.
- 15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에 글로벌 R&D 센터 건립 및 승강기 제조, 글로벌 제품 검증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국외 모회사들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305억원(약 2,6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15.12.5.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 송도동 소재 토지를 매수한 뒤 제조시설, 시험타워, 제품검증센터 등을 건립하여 운영 중임.
- 질의법인은 '16.2월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청한 결과 16.3.15. 조세감면 결정을 받음.

(질의내용)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제조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엘리베이터 제조·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조세감면 범위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 제 1항제 2호의 2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범위는 같은 조 제 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 결정을 하면서 정한 감면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라.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조특, 서면-2022-법규법인-3940, 2023.06.15)

■ 질의

(사실관계)

- A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질의법인에 2012.5.16.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질의법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오다, 2021.12.31.

정년퇴직하였으며, 2022.1.1. 질의법인과 계약직 근로계약(1년 단위)을 체결한 후 정년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1.12.31. 정년퇴직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지급완료, '22.1.1. 4대보험 신규 가입

(질의내용)

- 2021.12.31. 정년퇴직 후, 2022.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2022 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마. 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창작개발의 수행을 보조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함 (조특, 서면-2023-법인-1004, 2023.06.14)

■ 질의

(사실관계)

- (주)○○은 웹툰을 제작하여 플랫폼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출판물 제작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17조의 3 제 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3.3.8. 인정받음.
- 업창작전담부서는 ①웹툰 시나리오 개발 및 스토리보드 제작, ②등장인물에 대한 캐릭터 디자인, ③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작화 등의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창작전담요원 2명과 보조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창작전담요원은 웹툰의 창작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보조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 26조제 3항·제 4항의 학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조원으로 연구원 현황에 등록하였으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고 웹툰 창작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질의내용)

- 기업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보조원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기업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창작개발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에 따른 연구·인

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함.(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7 조제 3 항제 1 호 · 제 2 호 · 제 3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바.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에 해당하는 여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53 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2, 2023.06.02)

■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동수주한 공사 수행을 위한 조인트벤처를 구성하여「JV of A, B, C」명으로 사업용 금융계좌를 운용할 때 공동수주한 구성원(예:내국법인 C)이 그 금융계좌를 본인이 공동명의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53 조제 2 항제 2 호의 공동명의계좌는 2 명 이상의 명의인 간에 공동명의계좌 개설이라는 의사의 합치 하에 개설국 금융기관의 공동명 의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 2 명 이상의 명의인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계좌를 의미함. 따라서, 공동명의계좌 여부는 계좌 개설 약정, 공동명의 계좌 개설 절차 등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본 사안은 공동명의계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실질적 소유자 여부는 관련 소재국 법령 및 약정 등을 기초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4 조에 따라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이자 · 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본 사안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사. 법령개정으로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 제과-352, 2023.06.22)

■ 질의

2020.1.1. 전에 취득한 금형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 방법

■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2020.2.11. 대통령령 제 30396 호)되어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28 조제 4 항에 따라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
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